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92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 7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「안산시 건축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함.

## □ 주요내용

-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1.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 
(안 제21조의2)
  -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·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안전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소규모 건축물 등 감리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
2. 건축허가(신고)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개정  
(안 제22조제3항)
  - 건축허가(신고)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사용승인 수수료 기준의 20%로 구분 개정
3.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
(안 제4조의2, 안 제20조제1항, 안 제25조제3항, 안 별표3)
  -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조문 및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4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5

## < 불임 1 >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6조의4제2항” 을 “영 제6조의5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법 제20조제1항” 을 “법 제20조제2항제3호” 로 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)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「건축사법」 제 19조의3에 따른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(이하 이 조에서 "대가기준" 이라 한다) 별표5 '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' 을 준용하고, 상 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, 건축주는 공 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 물신축단가표(한국감정원)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'건축물의 종별 구분' 에 따른다.

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산정식	$Y = y_1 - \frac{(X-x_2)(y_1-y_2)}{x_1-x_2}$
X	당해금액 (x1: 큰 금액, x2: 작은 금액)
Y	당해 공사비요율 (y1: 작은 금액요율, y2: 큰 금액요율)

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 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지급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”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
2.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

제25조제3항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건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축과장 김경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건축행정계장 변성욱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효진 (행정 2916)

[별표 3]

### 대지안의 공지(제29조 관련)

#### 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
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</li> <li>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li> </ul>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</li> <li>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li> </ul>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 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미터 이상</li> </ul>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미터 이상</li> </ul>
마. 공동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파트 : 3미터</li> <li>- 연립주택 : 2미터</li> <li>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</li> </ul>
바. 그 밖의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미터 이상</li> </ul>

## 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
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	- 1미터 이상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- 1.5미터 이상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)	- 1.5미터 이상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	- 아파트 : 3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
바. 그 밖의 건축물	- 0.5미터 이상

< 봄입 2 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
	<p>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 단가표(한국감정원)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‘건축물의 종별 구분’에 따른다.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</p>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text-align: right;">산정식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<math display="block">Y = y_1 - \frac{(X - x_2)(y_1 - y_2)}{x_1 - x_2}</math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text-align: right;">X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당해금액 (x1: 큰 금액, x2: 작은 금액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 text-align: right;">Y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당해 공사비요율 (y1: 작은 금액요율, y2: 큰 금액요율)</td> </tr> </table>	산정식	$Y = y_1 - \frac{(X - x_2)(y_1 - y_2)}{x_1 - x_2}$	X	당해금액 (x1: 큰 금액, x2: 작은 금액)	Y	당해 공사비요율 (y1: 작은 금액요율, y2: 큰 금액요율)
산정식	$Y = y_1 - \frac{(X - x_2)(y_1 - y_2)}{x_1 - x_2}$						
X	당해금액 (x1: 큰 금액, x2: 작은 금액)						
Y	당해 공사비요율 (y1: 작은 금액요율, y2: 큰 금액요율)						
	<p>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</p>						
제22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	제22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						
①② (생략)	①② (현행과 같음)						
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 에 따라 지급한다.						
〈신설〉	1.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.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						
〈신설〉	④ (현행과 같음)						
④ (생략)		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25조(대지의 조경)</b></p> <p>①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식재 기준,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,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<u>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.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<b>제25조(대지의 조경)</b></p> <p>①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p><b>대지안의 공지(제29조 관련)</b></p> <p>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 건축물</th><th>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</td><td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</td><td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</td><td>-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</td><td>-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마. 공동주택</td><td>- 아파트 : 3미터 - 연립주택 : 2미터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바. 그 밖의 건축물</td><td>- 1미터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- 3미터 이상	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	- 3미터 이상	마. 공동주택	- 아파트 : 3미터 - 연립주택 : 2미터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바. 그 밖의 건축물	- 1미터 이상	<p>[별표 3]</p> <p><b>대지안의 공지(제29조 관련)</b></p> <p>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 건축물</th><th>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</td><td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</td><td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</td><td>-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</td><td>- 3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마. 공동주택</td><td>- 아파트 : 3미터 - 연립주택 : 2미터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</td></tr> <tr> <td>바. 그 밖의 건축물</td><td>- 1미터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- 3미터 이상	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	- 3미터 이상	마. 공동주택	- 아파트 : 3미터 - 연립주택 : 2미터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바. 그 밖의 건축물	- 1미터 이상
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-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	-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공동주택	- 아파트 : 3미터 - 연립주택 : 2미터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바. 그 밖의 건축물	-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-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	- 3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공동주택	- 아파트 : 3미터 - 연립주택 : 2미터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바. 그 밖의 건축물	-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대상 건축물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1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 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1.5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1.5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아파트 : 3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바. 그 밖의 건축물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0.5미터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- 1미터 이상	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 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	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- 1.5미터 이상	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)	- 1.5미터 이상	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- 아파트 : 3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바. 그 밖의 건축물	- 0.5미터 이상	<p>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대상 건축물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1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 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1.5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1.5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아파트 : 3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바. 그 밖의 건축물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- 0.5미터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- 1미터 이상	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 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	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- 1.5미터 이상	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)	- 1.5미터 이상	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)	- 아파트 : 3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바. 그 밖의 건축물	- 0.5미터 이상
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-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 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- 1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)	- 1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- 아파트 : 3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바. 그 밖의 건축물	- 0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 건축물	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-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 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- 1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)	- 1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)	- 아파트 : 3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바. 그 밖의 건축물	- 0.5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